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설 에너지영재학교 설립 및 장관 승인 요건 완화〉

■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74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도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13.
3. 회부연월일 : 2026. 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특화 분야 교육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융복합 인재의 조기 발굴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에너지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 분야 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설 에너지영재학교 설립 근거 신설

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에너지영재학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학교를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간주하며, 교원의 임용 및 타 학교 교원의 파견 근거, 교원 인사위원회의 별도 설치, 졸업생의 학력 인정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2, 제8조의2,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1조, 제24조의2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부설기관) 한국에너지공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u>
제4조(정 관)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정 관)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u>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8조의2(에너지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에너지 분야 과학</u>

현행	개정안
제9조(평의원회) ① <u>한국에너지공대</u>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 5.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u>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에너지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두는 에너지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에너지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 제9조(평의원회) ① <u>한국에너지공대(부설기관은 제외한다)</u>-----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에너지영재학교의 교직

현행	개정안
<신 설>	원) ① 에너지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에너지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에너지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총장은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의3(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현행	개정안
제20조(교원의 임면) ① <u>한국에너지공대</u> 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u>에너지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u> 제20조(교원의 임면) ① <u>한국에너지공대(에너지영재학교를 포함한다)</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총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 ----- ----- ----- ----- ----- ----- ----- ----- -----.
⑥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⑥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 ----- ----- ----- ----- ----- ----- ----- -----.

현행	개정안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 4. (생략) ⑦ (생략) <u>제21조(교원인사위원회)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u> <u>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u><신설></u>	----- ----- -----. 1. ~ 4.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u>제21조(교원인사위원회와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에너지영재학교에는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u> <u>제24조의2(학력의 인정) 에너지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u>

현행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국가 에너지 산업의 미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2년 3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개교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다른 4대 과학기술원¹⁾과 달리 대학 부설기관 및 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에너지영재학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학교를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간주하며, 교원의 임용, 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졸업생의 학력 인정 등 에너지영재학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개정안에 따른 에너지영재학교 설립 관련 주요 신설 규정 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해당 조문
설립 근거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에너지영재학교) 설치	안 제3조의2, 제8조의2
법적 지위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간주	안 제8조의2
교직원 인사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 및 행정직원 배치 근거 마련 에너지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 별도 설치	안 제18조의2, 제21조
외부 파견	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교원의 에너지영재학교 파견 허용	안 제18조의3
학력 인정	졸업 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안 제24조의2

1)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3조의3, 「울산과학기술원법」 제7조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11에 각각 부설 과학영재학교의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최근 인공태양,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남 지역의 경우 에너지 산업 잠재력 대비 고급 과학영재 교육 인프라(과학고 1개교)가 제한적인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미래 핵심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적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신규 영재학교 설립에 대한 부처 간 협의 진행 상황, 타 과학영재 학교와의 차별성, 소요 예산의 구체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에너지영재학교 설립 및 대학 부설 필요성에 대한 교육부와 협의 현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관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고급 인재의 조기 육성을 촉진하고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에 대해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음.

반면 교육부는 전체 고등학생 수 대비 광주·전남 지역의 영재학교 학생 비율(0.32%)이 이미 전국 평균(0.19%)을 상회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지역 간 균형성 측면에서 신중한 입장을 회신하였음.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 동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대안적 경로가 존재함

을 지적함²⁾.

한편, 본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에너지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간주되나, 현행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는 영재학교의 지정 및 설립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³⁾.

따라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부설 영재학교 신설 시 기존 영재교육 법체계와의 정합성 및 관계 부처 간 권한 상충 여부에 대하여 교육부와 의 공식적인 합의와 이견 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기존 과학영재학교와 구분되는 특화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음.

[4대 과학기술원 영재학교 설립 추진 현황]

대학명	관련 법률 개정일	학교명 (특화 분야)	개교 목표	정원 (모집)
KAIST	2009. 2. 6.	AI·바이오 영재학교	2027년	150명 (매년 50명)
GIST	2024. 1. 30.	AI 영재학교	2027년	150명 (매년 50명)
DGIST	2024. 10. 22.	과학영재학교 (미정)	2028년	(미정)
UNIST	2024. 10. 22.	과학영재학교 (미정)	2029년	240명 (매년 80명)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7조(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영재학교를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영재학교 지정·설립과 운영)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영재학교의 지정·설립 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존 과학영재학교는 수학·과학 전반을 균형 있게 다루는 반면, 에너지영재학교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에 집중하는 미션형 영재학교⁴⁾로서의 차별성을 가짐.

특히,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등 에너지 공기업·연구기관과의 산학연계를 통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⁵⁾ 및 6대 연구 분야⁶⁾ 연구실 참여 등 현장형 융복합 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임.

[기존 과학영재학교와 에너지영재학교의 차별성 비교]

구 분	과학영재학교 (기존 영재학교)	에너지영재학교
영재 정의	수학·과학 분야 재능을 보유하여 심화 교육이 필요한 학생	에너지 분야 관심과 재능을 지니며 에너지 특화 교육이 필요한 학생
교육 분야	수학·물리·화학·생명·지구과학 등 일반 자연계 분야	수학·과학 외 에너지공학 및 탄소중립 관련 특화 교육
산학 연계	대학 등과 연구 체험 프로그램 중심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연구기관과의 세미나 및 프로젝트 구조화
진학 방향	과기특성화대학·종합대 등 진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및 관련 학과 진학

따라서 본 개정안 심사 시에는 신설되는 에너지영재학교가 기존 일반 과학영재학교 및 타 과학기술원이 추진 중인 영재학교와 중복되지 않고 본연의 설립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특화

4) 미션형 영재학교(Mission-oriented Gifted School): 특정 산업이나 탄소중립 등 국가적 전략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이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하여 해당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의 영재학교.

5) PBL (Project-Based Learning, 프로젝트 기반 학습): 학생이 실제 문제나 과제를 중심으로 탐구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교육 방식.

6)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6대 연구 분야: 에너지AI, 에너지신소재, 차세대그리드, 수소 에너지, 환경·기후기술, 원자핵에너지를 의미함.

커리큘럼과 산학 연계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구현 가능성 및 지속 담보 방안 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신규 학교 설립에 수반되는 예산 추계 및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부속 기관 설립에는 부지 확보, 건축, 설비 등 대규모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 및 매년 운영비가 소요됨.

실제로 타 과학기술원의 영재학교 설립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KAIST AI·바이오 영재학교의 총사업비는 585억 원, GIST AI 영재학교는 665억원 규모로 각각 추산되고 있음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 자료에 따르면, KENTECH 에너지 영재학교의 경우 현시점에서는 정원 규모, 설립 부지, 개교 목표 시점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정밀한 소요 예산 추계가 곤란한 상태임.

향후 타 과기원 사례(초기 구축비 국비·지방비 매칭, 운영비 국비 조달)를 참조하여 관계기관 간 분담 구조를 구체화할 예정인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비한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학생 정원 등 학사 관련 사항 승인 권한 완화

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이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교육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대한 보고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학생)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u>정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u>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학생) ① ----- ----- ----- ----- <u>정하고, 기</u> <u>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최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2023.5)」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효율향상, 전력계통, 원자력 분야 등을 중심으로 총 21,056명(석·박사급 8,535명 포함)의 인력 수급 부족이 전망됨.

[에너지 신산업 분야 인력 수급 전망 ('21~'30년 누적)]

(단위: 명)

구 분	총 수요	총 공급	수급 차이 (공급-수요)	비 고
전체 인력	280,886	259,830	△21,056	에너지 산업 전체
석·박사급	41,761	33,226	△8,535	매년 평균 853명 부족
학사급	—	—	△15,000	매년 평균 1,500명 부족
효율향상 분야	152,007	136,513	△15,494	주요 분야별 수급 불균형
전력계통 분야	41,477	35,629	△5,848	주요 분야별 수급 불균형
원자력 분야	51,395	46,896	△4,499	주요 분야별 수급 불균형
신재생에너지 분야	25,238	28,533	+3,295	초과 공급 전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안)」(2023.5) 재구성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학생 입학 관련 사항을 정할 때 주관부처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춘 신속한 학사 개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반면, 국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유사한 설립 목적을 지닌 「한국 과학기술원법」 등 4대 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총장이 관련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한 후 주관부처 및 교육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타 과학기술원법과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학에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유사 법령(과학기술원법) 비교]

구 분	관련 법률 조문 내용
(현행)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법 (KENTECH)	제23조(학생)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되,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u>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23조(학생)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한국과학기술원법 (KAIST)	제18조(학생) 과학기술원의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과정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u>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광주과학기술원법 (GIST)	제17조(학생) 광주과기원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u>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울산과학기술원법 (UNIST)	제11조(학생) 울산과기원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DGIST)	제12조의10(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u>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개정안이 통과되어 승인 절차가 보고로 완화될 경우, 대학 측은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산업계 인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실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측은 본 개정안을 통해 행정적 제약이 완화될 경우, 1차적으로 학부 정원을 20~50명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또한, 에너지 분야 연구 역량 및 기술사업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공학인재 전형' 및 '창업인재 전형' 신설 등 입학전형 개편을 구상하고 있어, 에너지 신산업 인력 수급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 통과 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학부 입학전형 개편 구상(안)]

전형 유형	개편 및 운영 방향	비 고
공학인재 (특기자) 전형	신규 도입 (1단계 +50명 확대 시 35명 선발)	에너지 분야 연구역량 인재 조기 발굴
창업인재 전형	신규 도입	에너지 신산업 기술사업화 역량 인재 유치
고른기회 전형	현행 수준 유지 (정원 외 10%)	사회통합 취지 반영
일반/수능우수자 전형	기존 선발정원 규모 유지	안정적 학사 운영 도모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 재구성

참고로 현재 '보고' 제도로 운영 중인 4대 과학기술원의 경우, 환경 변화와 국가적 인력 수요에 맞추어 2027학년도 입학정원을 전년 대비 총 340명 증원하는 등 정원 조정을 단행하고 있음.

이는 타 과학기술원의 경우 정원 조정의 자율성을 활용하여 산업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최근 3년간 4대 과학기술원 및 KENTECH 입학정원 변동 추이]

(단위: 명)

대 학 명	2025학년도 입학정원	2026학년도 입학정원	2027학년도 입학정원	증감 추이 ('26 대비 '27)
KENTECH	110 (정원내 100 / 외 10)	110 (정원내 100 / 외 10)	110 (정원내 100 / 외 10)	동결
KAIST	1,005 (정원내 770 / 외 235)	1,015 (정원내 780 / 외 235)	1,055 (정원내 880 / 외 175)	+40명 증원
GIST	230 (정원내 200 / 외 30)	230 (정원내 200 / 외 30)	330 (정원내 300 / 외 30)	+100명 증원
UNIST	480 (정원내 400 / 외 80)	480 (정원내 400 / 외 80)	580 (정원내 500 / 외 80)	+100명 증원
DGIST	230 (정원내 200 / 외 30)	230 (정원내 200 / 외 30)	330 (정원내 300 / 외 30)	+100명 증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자료 재구성

본 개정안에 대해 주관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타 과학기술원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국가 대학 정원 정책을 관할하는 교육부 역시 별도의 이견이 없음을 공식 회신하였음.

따라서 관계 부처의 의견과 유사 기관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에너지 신산업 인력 양성 촉진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7